

#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운영희 의원 발의)

|          |    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<br>번호 | 625 |
|----------|-----|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3월 29일

발 의 자: 운영희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김규남, 김동욱, 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 김원중, 김재진, 김지향, 김태수, 김혜영, 남궁역, 남창진, 문성호, 박성연, 박영한, 박춘선, 박칠성, 박환희, 서상열, 송경택, 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 유만희, 유정인, 유정희, 윤기섭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소라, 이종태, 이종환, 이효원, 이희원, 장태용, 최민규, 최진혁, 허·훈, 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 의원(45명)

## 1. 제안이유

- 초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난임 지원이 대대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나, 현행 조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음.
- 이에 난임 지원사업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을 추가하여 난임부부의 부담을 경감 하고,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난임극복 지원사업에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가함 (안 제7조제1항제1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

다. 기타 : 신 ·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호를 제2호로 하고, 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사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| 개 정 안  |
|--|--|
| <p>제7조(지원사업) 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(생 략)</p> <p>3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| <p>제7조(지원사업) ① 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<u>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사업</u></p> <p>2. (현행 제1호와 같음)</p> <p>3. (현행 제2호와 같음)</p> <p>4. (현행 제3호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|